

■ 신고 근거

- ▶ 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(연안체험활동 신고)

■ 신고 대상

- ▶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: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(영리목적)

■ 신고 종류

| 신고종류 | 기한 | 내용 | 비고 |
|---|------------|--|--|
| 계획신고 | 활동 14일전 | 연안체험활동 세부 내용이 확정적이며 단기적 및 일회성으로 활동 할 경우 | 구비서류 첨부 : ○ 안전관리계획서 |
| (변경신고) | 활동 시작전 | 계획신고 후 세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| -안전관리요원 : 수중·수상체험활동은 해당 자격증 필수 및 안전교육 이수증 |
| 기간제신고 | 활동 14일전 | 세부 내용이 미확정적이며 장기적으로 활동 할 경우, 일정 기간(3개월 이내)을 정하여 신고 | -안전장비 및 배치 서류 등 -보험증권 등(공제포함) : 수상·수중형은 의무가입 |
| (건별신고) | 활동 시작전 | 기간제신고 기간내에서 세부 내용 확정된 경우 | 별도 구비서류 첨부 요하지 않으나 구비서류 변동시에는 제출 |
| * 세부 내용 : 신고서 작성 내용 중 활동일시, 인원 및 장소, 안전관리요원 등 | | | |

■ 신고 제외 대상

| 제외 대상 | 설명 및 예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타 법률의 지도·감독을 받는 법인·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연안사고 예방법」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* 민법에 의한 사단·재단법인 *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* 교육관계법(유아교육법,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)에 따른 학교 * 수중레저법에 따른 교육 사업자 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* 정부기관, 지자체에 속한 단체 * 정부기관, 지자체에 속한 단체 청소년단체(스카우트, 걸스카우트, 청소년연맹, 해양청소년연맹, 4에이치활동, 청소년직접자) *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에 따라 신고·인증된 활동 운영자 또는 단체(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수련원) * 「수산업법」, 「도농교류법」에 따라 지정된 유어장, 어촌체험마을 등 |
|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성지순례, 수련회 등 ▶ 단, 아래의 경우는 신고대상 *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이상인 수상형 체험활동 *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이상인 수중형 체험활동 |
| 참가자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 ▶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 ▶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미만인 일반형 체험활동 |

■ 신고 방법

- ▶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시스템 이용하여 **온라인 작성 신고**하거나 체험활동하는 장소 **관할 파출소에 방문 신고**

■ 안전교육 이수증 첨부

- ▶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.
- ▶ 온라인 시스템으로 안전교육 신청하신분은 수료 후 MyPage에서 이수증 다운로드

■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확인

| 구분 | 수상형 | 수중형 | 일반형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격 |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|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 ※ 고시 : 2017-1호 (2017.7.26.) |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자 |
| | 인명구조 자격증 확인 | | 안전교육 이수증 확인 |
| 배치 인원 | 참가자 10명 당 1명 | 참가자 8명 당 1명 | 참가자 20명 당 1명 |

<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현황(고시) >

대한적십자사, (재)한국YMCA전국연맹, (사)한국해양소년단연맹, (사)대한인명구조협회, (사)수상인명구조단, (사)한국다이빙레스큐팀, (사)한국해양구조협회, (사)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, (사)한국구조연합회, (사)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, (사)대한수중·핀수영협회, (사)한국수상안전협회, (사)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, (사)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

< 고시에 따른 수중형 자격인정 단체 >

(사)한국잠수협회(KUDA), ACUC KOREA, BSAC KOREA, CMAS KOREA, NAUI, 국제안전잠수협회(SNSI), IANTD KOREA, IDEA ASIA, IDIC, NASDS KOREA, ANDI international KOREA, NASE KOREA, NDL KOREA, PADI Asia Pacific, PDIC-SEI ASIA, PSAI KOREA, RAID/SDD INTERNATIONAL, SDITDI KOREA, 세계스킨스쿠버연맹(SI), SSI KOREA, UTR KOREA, (사)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(GSA), PSDC, ISEA, AFIA, (사)대한안전연합

- ▶ 상기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이외 비상구조선 안전관리요원은 추가배치 1명 하여야함 (단, 비상구조선 배치 안전관리 요원은 안전교육이수만 필요)

■ 안전장비 종류 및 배치 기준 확인

| 구분 | 수상형 | 수중형 | 일반형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비상구조선 | ▶ 탑승정원이 체험활동 참가자 100% 이상인 선박 | | 없음 |
| 구명조끼 (구명슈트) | ▶ 참가자 110% 이상에 해당하는 수 (약 10% 소아용 구명조끼) | | 없음 |
| 구명튜브 (구명부환) | ▶ 참가자 10명 당 1개 이상 | | ▶ 참가자 20명 당 1개 이상 |
| 구명줄 | ▶ 지름 10mm 이상, 길이 30m 이상 | | |
| | ▶ 참가자 10명 당 1개 이상 | ▶ 참가자 5명 당 1개 이상 | ▶ 참가자 20명 당 1개 이상 |
| 구급장비 | ▶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| | |

■ 보험증권 등 첨부

- ▶ 보험가입 대상 :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보험 등에 가입(연안체험활동은 수상(水上)이나 수중(水中)형)
- ▶ 보험금액 : 보험의 보험금액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.

■ 안전관리요원 자격증 첨부

수중형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인정단체(26개)

| 연번 | 단체명 | 연번 | 단체명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(사)한국잠수협회(KUDA) | 13 | PADI Asia Pacific |
| 2 | ACUC KOREA | 14 | PDIC-SEI ASIA |
| 3 | BSAC KOREA | 15 | PSAI KOREA |
| 4 | CMAS KOREA | 16 | RAID/SDD INTERNATIONAL |
| 5 | 국제안전잠수협회(SNSI) | 17 | SDI/TDI KOREA |
| 6 | IANTD KOREA | 18 | 세계스킨스쿠버연맹(SI) |
| 7 | IDEA ASIA | 19 | SSI KOREA |
| 8 | IDIC | 20 | UTR KOREA |
| 9 | NASDS KOREA | 21 | (사)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(GSA) |
| 10 | ANDI international KOREA | 22 | NAUI |
| 11 | NASE KOREA | 23 | PSDC |
| 12 | NDL KOREA | 24 | ISEA |
| | | 25 | AFIA |
| | | 26 | (사)대한안전연합 |

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 흐름도

